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2025. 12.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5년 3월 14일, 이정현의원 등 13인

나. 회부일자: 2025년 3월 17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2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8.26) 상정, 제안설명, 검토
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부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2차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2025.11.18.) 상정, 의결(대안반영폐기)

제17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11.24.) 상정, 의결(대안
반영 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이정헌의원)

현행법은 전기통신사업의 적절한 운영과 효율적 관리를 통하여 전기통신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선택약정할인 등 약정방식 및 부가서비스·결합서비스 가입 등에 따라 계약형태가 다양화되면서 요금체계가 복잡해지고 있으며, 중저가 요금제 부재 등으로 인하여 이용자의 요금제 선택권이 제약됨에 따라 이용자의 편익 및 공공복리가 감소하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에도 현행법상 이를 개선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미비한 상황임.

이에 이용자가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이용자에게 최적화된 전기통신서비스 요금제를 고지하도록 하고, 기간통신사업 이용현황에 관한 실태조사 및 조사에 기반한 분석보고서를 발간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이용자의 요금제 선택권을 강화하고 이용자의 편익을 제고하려는 것임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수석전문위원 이복우)

1) 이용자에 최적화된 전기통신서비스 요금제 고지

○ 정보 비대칭 해소와 이용자 권익 보호를 위해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

자에게 최적화된 요금제를 고지하도록 하는 등 개정안의 내용은 입법 취지 측면에서 타당

- EU는 2018년 12월 전자통신규제지침(EECC) 개정을 통해 이용자 권익 보호를 위하여 최종이용자에게 계약만료일 전에 약정만료, 해지방법, 최적요금 정보 등을 고지할 의무를 통신사업자에게 부과하고 있음

○ 다만, ①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¹⁾)는 통신사업자 및 정부와 함께 유사한 제도인 스마트초이스(통신요금정보포털)²⁾을 운영 중, ② 알고리즘의 공정성 미담보 시 전기통신사업자가 자사 이익을 위해 특정 요금제를 우선 추천할 우려, ③ ‘내용’의 경우에는 최적요금제 고지의 핵심적인 부분으로 법률유보의 원칙에서 법률에서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의견: 사업자로 하여금 이용자에게 최적 요금제 정보를 제공토록 하여 이용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지원하고자 하는 취지에 공감한다는 견해임

- 동 개정안 통과 시 최적요금제 고지의 방법과 내용을 마련할 때 객관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와 충분히 논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함

1)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orea Telecommunications Operators Association, KTOA)

2) <https://www.smartchoice.or.kr/smc/>

2) 기간통신사업 이용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 및 분석보고서 발간

- 과기정통부가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기간통신사업 이용현황 분석보고서를 발간하도록 하는 것은 이용자 요금체계 정보 제공과 정부 통신정책 수립에 기여할 수 있으므로 입법취지가 타당함
 - 개정안에는 실태조사를 위한 자료 요구권도 함께 마련되어 실질적으로 보고서 작성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 다만, 실태조사 항목 중 영업상 기밀은 분석보고서에 포함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영업비밀 보호 방안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의견: 합리적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통신요금 분석보고서 발간 등 정보제공 강화 필요성에 공감 한다는 입장임

4. 대체토론의 요지

없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김 현)

김장겸의원, 김현의원, 민병덕의원, 박상혁의원, 이정현의원, 이학영의원, 전용기의원, 최민희의원(2건), 한정애의원, 한민수의원, 황운하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12건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

한 결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조정하여 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음

7. 심사결과

대안반영폐기